

##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

의안 번호	83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. 8. .
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### 1. 제안이유

가. '11. 6. 30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으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여 “전통상업보존구역”을 지정하고,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(안 제11조)

○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#### 나. 부칙(안 제2조)

○ 제9조제7호 · 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

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- 제9조제7호(협의회 업무중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사항)  
제9조제8호(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록시 협의요청)  
제11조부터 제15조(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사항)

### 3. 근거법규

#### 가.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### 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1. 8. 8. ~ 8. 28.(의견 없음)

**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 
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**

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**제11조제1항 중 “500미터”를 “1킬로미터”로 한다.**

**부칙 제2조 중 “2013년”을 “2015년”으로 한다**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</b></p> <p>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<b>500미터</b>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</b>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<b>1킬로미터</b>----- ----- ---.</p>
<p><b>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7호 .</b></p> <p>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<b>2013년</b>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<b>부칙 제2조(유효기간)</b> ----- ----- ----- <b>2015년</b> ----- -----.</p>

# 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83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8. 25(목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8. 30(화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9. 5(월)

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2011. 6. 30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으로 “전통상업보존구역”을 기존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,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(안 제11조)
-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
- 부칙(안 제2조)
- 제9조제7호, 제8호 및 제11조 내지 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4. 근거법령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, 부칙 제2조

## 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김영호)

- 본 조례는 2011. 6. 30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할인점과 준 대규모 점포(기업형 슈퍼마켓)의 신규출점 제한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종전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지정하고, 아울러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
- 우리구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 등이 15개소인 점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호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는데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
- 또한, 지정된 범위의 유효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최소한 2015년 11월 23일 까지 발효도록 연장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

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